SHIN&KIM
법무법인(유) 세종

‘소비자 3법’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: 반복 위반 제재 강화 및 임의적 감경 축소

2026.07.01

공정거래위원회(이하 “**공정위**”)는 **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,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**(이하 각 “**표시광고법**”, “**방문판매법**“, “**할부거래법**“, 총칭하여 “**소비자3법**”)의 과징금 부과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시행령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(이하 **“과징금고시”**)를 개정하였습니다(**2026. 7. 1.부터 시행**). 이번 개정은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, 감경사유 및 감경률을 축소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. 아래에서는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

1. 주요 개정 내용

(1) 반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

이번 소비자3법의 시행령 개정으로 **법 위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한도가 기본과징금*의 50% 이내**에서 **100% 이내로 상향**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.

* 기본과징금(또는 기본 산정기준)이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중대성별 부과기준율 등을 적용한 금액으로,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.

또한, 소비자3법의 과징금고시 개정을 통해서도 위반행위 전력에 따른 가중 적용이 강화되었습니다. 기존에는 **과거 3년간 2회 이상의 위반 전력**이 있는 사업자에 한하여 과징금 가중이 가능하였으나, 이번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**과거 5년간 1회 이상의 위반 전력**만으로도 가중 적용이 가능합니다. 또한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률도 상향되어 기존에는 **기본과징금의 최소 20%에서 최대 50%의 범위에서만 가중**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**기본과징금의 최소 40%에서 최대 100%의 범위까지 가중**할 수 있습니다.

<반복 법 위반 과징금 가중부과기준 신·구 비교표(소비자3법 공통)>

내용	개정 전	개정 후
가중 기준	과거 **3년간 2회 이상** 위반부터	과거 **5년간 1회 이상** 위반부터

가중 한도		기본과징금의 **50% 이하**	기본과징금의 **100% 이하**
가중률	위반 횟수 **1회** 이상+ 가중치 합산점수* **2점** 이상	-	**40% 초과 ~ 50% 이하**
	위반 횟수 **2회** 이상+ 가중치 합산점수 **3점** 이상	**20% 이하**	**50% 초과 ~ 70% 이하**
	위반 횟수 **3회** 이상+ 가중치 합산점수 **5점** 이상	**40% 이하**	**70% 초과 ~ 90% 이하**
	위반 횟수 **4회** 이상+ 가중치 합산점수 **7점** 이상	**50% 이하**	**90% 초과 ~ 100% 이하**

* 공정위는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 조치 유형별로 가중치 점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(경고 0.5점, 시정권고 1.0점, 시정명령 2.0점, 과징금 2.5점, 고발 3.0점). 가중치 합산점수란 위반 전력에 포함되는 위 가중치 점수를 모두 합산한 값을 의미합니다.

(2) 임의적 감경사유 및 감경률 축소

소비자3법의 과징금고시는 **소비자 피해보상에 따른 감경률을 기존 최대 30%에서 최대 10%로 축소**하였습니다.

한편, **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**는 기존 감경사유였던 조사협조감경(10%)과 심의협조감경(10%)을 하나로 통합하여 **조사부터 심의까지 전 과정에서 협조한 경우에 한해 10% 이내에서 감경**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나아가, 감경사유 중 하나였던 '**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명백한 경우'를 삭제**하는 등 감경이 가능한 조건과 감경 수준을 한층 더 제한하였습니다.

(3) 표시광고법 과징금 산정기준 조정

이번 개정을 통해 기본과징금 산정 체계도 정비되었습니다. 개정 고시는 중대한 위반행위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**부과기준율의 하한 및 상한을 모두 상향**하는 한편, **'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' 구간**을 **두 단계로 세분화**하여 각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례하여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<과징금 산정기준 신·구 비교표(표시광고법)>

구분		개정 전	개정 후
관련 매출액 기준	**중대성 정도**	**부과기준율**	
	매우 중대한 위반행위	1.6% ~ 2.0%	**1.8% ~ 2.0%**
	중대한 위반행위	0.8% ~ 1.6%	**1.5% ~ 1.8%**
	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	0.1% ~ 0.8%	**1.0% ~ 1.5%**
			0.1% ~ 1.0%
관련	**중대성 정도**	**부과기준금액**	

매출액 산정 곤란시	매우 중대한 위반행위	4억원 ~ 5억원	**4억 5천만원 ~ 5억원**
	중대한 위반행위	2억원 ~ 4억원	**3억 5천만원 ~ 4억 5천만원**
	중대성 약한 위반행위	5백만원 ~ 2억원	**2억 5천만원 ~ 3억 5천만원**
			5백만원 ~ 2억 5천만원

2. 시사점

이번 개정은 지난 4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과징금 고시와 맥을 같이합니다(2026. 3. 23.자 뉴스레터: 공정거래 관련 과징금 부과 체계 전면 개편 및 제재조치 수준 대폭 강화 참조). 당시 반영되지 않았던 소비자3법의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관련 과징금 고시도 함께 개정하여 소비자3법에 대해서도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강화되고 임의적 감경 사유와 감경률은 축소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향후 소비자3법 관련 법 위반 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과징금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이처럼 소비자3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되는 경우 조사 개시 이후의 사후적 대응보다는 사전에 법적 리스크를 제거하고 예방하는 활동이 더욱 중요해지게 될 것입니다. 따라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단계부터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. 또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, 반복 위반 여부, 감경 요소의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

관련구성원

최한순
변호사

02-316-4707
hsochoi@shinkim.com

이창훈
변호사

02-316-4645
chlee@shinkim.com

이상돈
변호사

02-316-4638
sdlee@shinkim.com

석근배
변호사

02-316-4640
gbseok@shinkim.com

성승현
변호사

02-316-1606
shsung@shinkim.com

권오태
변호사

02-316-4069
otkwon@shinkim.com

정상민
변호사

02-316-1665
smjung@shinkim.com

Copyright SHIN & KIM LLC. All rights reserved.